

‘14년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안)

로봇 연구개발 결과의 제품화 및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 검증 지원으로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4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과제 목적

- 성공한 로봇 연구개발 결과의 제품화 및 기술이전 지원으로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
- 개발된 로봇의 상품성, 경쟁력, 가치 향상을 위해 로봇 콘텐츠의 제작 지원으로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촉진

2. 지원 내용

가. 지원 개요

세부과제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既개발 완료된 로봇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 디자인 개발 ▪ 시제품제작 ▪ 금형제작 ▪ 콘텐츠 제작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연구기관·대학 등의 제품화 가능한 기술의 기업 이전에 수반되는 사업화 검증지원	▪ 기술평가 ▪ 설계·디자인 ▪ 시제품제작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 **성능평가 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성능평가 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콘텐츠 제작 지원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인증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인증서비스의 V&V(verification & validation)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시험결과서 필요

※ **로봇기술제품화지원분야**는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기술평가 지원시**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기술이전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디자인개발	-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형태로 디자인하는 것
시제품 제작	-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
성능평가(필수)	-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수정 및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하는 것 ※ 반드시 성능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함
금형제작	- 양산을 위해 제품의 금속 주형(틀)을 제작하는 것
콘텐츠 제작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며 로봇 또는 로봇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콘텐츠로 터치UI, 각종 센서, GPS 등의 스마트 기능과 연계되어 콘텐츠 사용자의 특성(시간, 장소, 환경, Lifestyle)에 최적화되어 제공되는 앱(App)형태의 콘텐츠 제작
기술평가	- 기술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기술적 요소(기술성, 시장성, 사업 타당성 등)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술거래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함

☞ 제1호 :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호 :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 (지원규모) 15개 내외 과제 지원

- 제품화지원 13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2개 내외

○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세부과제	지원예산(과제당)	수행기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70,000천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 '15. 5. 31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지원금액) 세부과제별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 (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조정

○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로봇기술제품화지원	과제비의 80% 이내	과제비의 20%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로봇기술제품화지원/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과제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단, 콘텐츠제작지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
 - 직접비 내역은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금형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외주 제작, 장비사용료만을 인정함 (부가가치세는 제외)
 - ※ 시제품제작 등 자체 제작시 재료구입비 인정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후 50%, 중간점검 후 50% 지급
- 과제 협약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징구

다. 지원자격

구 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중소기업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과제종료 1개월전('15.4.30.)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건립중인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제종료 1개월전('15.4.30.)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한 경우 콘텐츠 제작 참여업체(또는 대행업체)는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업체	- 전국 모든 연구기관(대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 단, 주관 또는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은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분원 포함) •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과제종료 1개월전('15.4.30.)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건립중인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제종료 1개월전('15.4.30.)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지원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2)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및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및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 과제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라. 지원요건 및 방법

구 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지원요건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 “기술이전 양해각서” 또는 “비밀 유지각서” 보유
	-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경우 새로운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로봇 또는 로봇플랫폼 보유	
지원방법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과 기업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 이전 로봇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과 도입 희망기업의 컨소시엄
	- <u>주관은 기업만 가능</u> · 콘텐츠제작지원은 플랫폼을 보유한 로봇기업이 주관	- 주관은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도입 기업 모두 가능

마.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4. 10. 6
과제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14. 10. 13 ~ 11. 13(1개월)
과제 설명회 개최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설명회 : ‘14. 10. 17(금) 전국설명회 : ‘14. 10. 23(목)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14. 11. 12 ~ 11. 13(2일간)
사전 서류검토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4. 11. 14
중복성 이의제기	사전지원 제외 대상기관	‘14. 11. 17 ~ 11. 18(2일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계사)	‘14. 11. 19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금심의)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선정평가위원회	‘14. 11. 20 (예정)
지원 대상 선정 발표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4. 11. 21 (예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로봇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14년 11월 중
과제 수행	수행기관	‘14. 11월 ~ ‘15. 5월(7개월)
중간점검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5. 2월(예정)

○ (과제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참가대상
대구	10/17(금) 14:00 ~ 15: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층 대회의실	대구지역 로봇기업, 연관기업 등
전국	10/23(목) 15:40 ~ 16:10	KINTEX 제1전시장 2F 210호 회의실	전국 로봇기업, 연관기업 등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 (평가방법)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전문가 Pool을 바탕으로 구성

○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서면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발표평가 → 지원금심의 →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나. 평가 기준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항목	평가지표	비중 (%)
기술성 (30)	- 제품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콘텐츠제작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15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15
사업성 (35)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15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0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수행능력 (35)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10
	- 제작 능력 (인력 및 장비, 실적)	15
	- 사업비의 적정성	10
가점 (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5-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 (2점)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1점) - 연구기관(대학)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제품화 하려는 과제 (1점)	최대 5
합 계		100+5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항목	평가지표	비중 (%)
기술성 (30)	- 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15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15
사업성 (35)	- 기술이전 성공 가능성	15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품화)	10
수행능력 (35)	- 사업화 검증에 대한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10
	- 도입기업의 역량 및 제작능력 (인력 및 장비, 실적)	15
	- 사업비의 적정성	10
가점 (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5-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 (2점)	최대 5
합 계		100+5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별첨 참조

○ (우대기준) 최대 5점 이내 적용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5-1> 신규평가 우대기준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

- ① 의료 (재활로봇, 간호·보조로봇 등) ※ 단, 수술로봇 제외
- ② 사회안전 (재난안전, 사회인프라 등)
- ③ 중소제조 (섬유제품, 의복, 1차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용 기계장비제조 중심의 중소제조, 지역산업연계 중소제조 등)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신청기업이 입증책임)
- 연구기관(대학)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제품화하려는 과제

○ (감점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5-2> 신규평가 감점기준

4. 신청 방법

가. 신청서 교부·제출

-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게시
⇒ [알림] - [사업공고] - [14년도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공고]
- (접수기간) 2014. 11. 12(수) ~ 11. 1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1월 13일(목)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 (702-832)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7층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경북대학교내 위치)

○ (문 의 처)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소영 주임 ☎ 053-940-9534

다.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1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지정양식 ※ 50페이지 이내
2	발표자료 8부 및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과제계획서와 내용 일치(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무효처리)	자유양식 ※ 20페이지 이내
3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사본 8부	로봇제품화지원
	기술이전 양해각서 또는 비밀유지 각서 사본 8부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4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사본 8부	※ 금형제작을 지원할 경우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수행실적확인서 사본 8부 ②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사본 8부	※ 콘텐츠제작을 지원할 경우
	새로운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로봇 또는 로봇플랫폼 자료(사본 8부) 및 제시	
5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원본 1부, 사본 7부 ※ 제작대행기관별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부견적서 첨부	지정양식
6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주관 및 참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제외	※ 기관일 경우 제외
7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주관 및 참여)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예비창업자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	※ 기관일 경우 제외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관 및 참여)	※ 기관일 경우 제외
9	주관·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지정양식
10	사업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지정양식
11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지정양식
12	기타 관련 증빙서류 및 기업(기관)소개 자료 등	

5. 관련 법령 (별첨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6. 기타 사항

-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점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